

지역으로 상향조정되는 지역으로 타 지역에 적용한 공공용지 부담률을 고려해 볼 때 20% 이상이 요망됨.

도시계획과 의견

- 세부개발계획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계획지침의 최고높이 범위내(사선제한)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함.

시내버스요금 기준 및 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(안)

의안 번호	59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4. 28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건 명 : 시내버스요금 기준 및 요율 조정(안)
2. 제안사유

- 시내버스 근로자의 임금협상이 2000. 4. 4 완료되에 따라 임금인상분을 시내버스 요금에 반영하고, 지하철·승용차 등 대체운송수단의 증대에 따른 승객감소와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야기된 시내버스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을 조정할 계획임.
-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요금 기준 및 요율 조정안에 대해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시내버스요금 기준 및 요율 조정(안) : 따로 붙임
4. 관계법규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

시내버스요금 기준 및 요율 조정(안)

버스요금인상요인 검증용역결과
<도시형>

(금액단위: 원)

구 분	현 행 요 금	대당일일 운송수입	대당일일 운송원가	인상요인 반영요금
현행 할인율 2% 유지	500	360,908	408,087	565
할인율 5% 적용시	500	360,908	418,695	580
할인율 8% 적용시	500	360,908	430,013	596
할인율 10% 적용시	500	360,908	440,588	610

<좌석형>

(금액단위: 원)

구 분	현 행 요 금	대당일일 운송수입	대당일일 운송원가	인상요인 반영요금
현행 할인율 2% 유지	1,000	380,886	460,336	1,209
할인율 5% 적용시	1,000	380,886	470,531	1,235
할인율 8% 적용시	1,000	380,886	480,542	1,262
할인율 10% 적용시	1,000	380,886	490,173	1,287

- ※ 할인율 확대에 따른 수입감소분을 원가요인으로 처리
- ※ 사후보상에 따라 '98년도, '99년도에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적자분의 원가인상요인(10원)은 미반영

□조정대안별 세부내역 및 장·단점
○조정대안별 세부내역

(금액단위: 원)

안 별	구 분	도시형 버스			일반좌석버스			고급좌석버스		
		일 반	중·고등	초등생	일 반	중·고등	초등생	일 반	중·고등	초등생
1 안	현 금	580	580	240	1,160	1,160	1,160	1,270	1,270	1,270
	카 드	570	390		1,140	1,140		1,240	1,240	
	회수권	-	390	-	-	-	-	-	-	-
2 안	현 금	590	590	240	1,190	1,190	1,190	1,300	1,300	1,300
	카 드	560	420		1,140	890		1,240	980	
	회수권	-	440	-	-	-	-	-	-	-
3 안	현 금	600	600	240	1,200	1,200	1,200	1,320	1,320	1,320
	카 드	550	410		1,100	900		1,210	990	
	회수권	-	450	-	-	-	-	-	-	-
4 안	현 금	610	610	250	1,210	1,210	1,210	1,330	1,330	1,330
	카 드	560	420		1,110	910		1,220	1,000	
	회수권	-	460	-	-	-	-	-	-	-
5 안	현 금	600	600	250	1,200	1,200	1,200	1,300	1,300	1,300
	카 드	550	410		1,100	900		1,200	980	
	회수권	-	450	-	-	-	-	-	-	-

○조정대안의 조정기준 및 장·단점

안 별	조 정 기 준	장 점	단 점
1 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가상승요인 반영 · 현행 교통카드 할인율 2%, 학생할인율 32% 유지 · '98, '99년 적자분(10원) 반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금요금 기준 10%대 이내의 비교적 낮은 폭으로 인상 · 현행 요금체계 유지 · '98, '99년 적자분 일부 보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0원단위 현금정수로 요금 수불 불편 ·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유인 미흡 · 학생할인에 있어서 지하철과의 현격한 차이 미해소
2 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가상승요인 반영 · 교통카드 할인율 5%, 학생 할인율 25%로 조정 · 좌석버스에서도 학생카드 할인 · '98, '99년 적자분(10원) 반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금요금 기준 10%대 이내의 비교적 낮은 폭으로 인상 · 교통카드 할인폭 확대로 카드사용 활성화 · 학생 할인율 조정으로 지하철과의 형평성 제고 · 좌석버스에서의 학생카드 할인으로 학생복지 증진 · '98, '99년 적자분 일부 보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0원단위 현금정수로 요금 수불 불편 · 교통카드 사용 활성화유인 다소 미흡

안 별	조 정 기 준	장 점	단 점
3 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가상승요인 반영 · 교통카드 할인율 8%, 학생 할인율 25%로 조정 · 좌석버스에서도 학생카드 할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통카드 할인폭 확대로 카드 사용 활성화 · 학생 할인율 조정으로 지하철과의 형평성 제고 · 좌석버스에서의 학생카드 할인으로 학생복지 증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0원단위 현금징수로 요금 수불 불편 · 현금요금 기준 20%대 인상으로 시민이해 필요 · 사후보상적 차원의 요금조정 임에도 '98, '99년도 적자분 미보전
4 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가상승요인 · 교통카드 할인율 8%, 학생 할인율 25%로 조정 · 좌석버스에서도 학생카드 할인 · '98, '99년 적자분(10원) 반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통카드 할인폭 확대로 카드사용 활성화 · 학생 할인율 조정으로 지하철과의 형평성 제고 · 좌석버스에서의 학생카드 할인으로 학생복지 증진 · '98, '99년 적자분 일부 보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0원단위 현금징수로 요금 수불 불편 · 현금요금 기준 20%대 인상으로 시민이해 필요
5 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원가상승요인 반영 · 교통카드 할인율 8%, 학생 할인율 25%로 조정 · 좌석버스에서도 학생카드 할인 · 요금수불편의 고려 50원, 100원 단위로 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교통카드 할인폭 확대로 카드사용 활성화 · 학생 할인율 조정으로 지하철과의 형평성 제고 · 좌석버스에서의 학생카드 할인으로 학생복지 증진 · 50원·100원 단위의 현금요금 설정으로 요금수불효율 증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금요금 기준 20%대 인상으로 시민이해 필요 · 사후보상적 차원의 요금조정 임에도 '98·'99년도 적자분 미보전

□교통관리실(안) - 제5안

(금액단위 : 원)

차 종	승 객 구 분		현행요금 (카드사용시)	조 정 안 (카드사용시)	현행대비 증감	
					금 액	인 상 륜
도시형버스	일 반	현 금	500	600	+100	20.00%
		카 드	490	550	+60	12.24%
	중·고생	현 금	500	600	+100	20.00%
		카 드 회 수 권	340 340	410 450	+70 +110	20.59% 32.35%
	초 등 생	현 금	200	250	+50	25.00%
일반좌석버스	일 반	현 금	1,000	1,200	+200	20.00%
		카 드	980	1,100	+120	12.24%
	중·고생	현 금	일반과 동일	1,200	+200	20.00%
카 드		일반과 동일	900	-80	-8.16%	
고급좌석버스	일 반	현 금	1,100	1,300	+200	18.18%
		카 드	1,080	1,200	+120	11.11%
	중·고생	현 금	일반과 동일	1,300	+200	18.18%
카 드		일반과 동일	980	-100	-9.26%	

- 20%대의 현금요금의 인상이나 교통카드할인율의 확대로 교통카드 이용률이 70%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카드요금의 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상폭을 계산할 경우 10%대의 인상률이며,
- 교통카드 할인율의 확대로 수입투명성의 확보와 교통카드의 이용증진 등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카드 정책에 부응하고,
- 학생 할인율의 조정으로 지하철과의 형평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,
- 50원과 100원 단위의 현금요금 설정으로 요금 징수관리가 용이하며, 좌석버스에도 학생전용카드의 학생할인을 도입하여 학생 복지 증진이 가능함.